

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정책기획관)

제출일 : 2022. 6.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(2018.6.28.시행)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(2020.3.3.시행)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‘예산편성’ 에서 ‘전체 예산과정*’ 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‘주민’ 의 정의를 조례에서 명확히 하고자 함.

* 예산과정 : 예산의 편성·심의·집행·결산과 회계검사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예산편성 과정’ 을 ‘예산편성 등 예산과정’ 으로 개정
(안 제1조,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10조)
- 나. 주민참여 예산제에서의 ‘주민’ 에 대한 용어의 정의(안 제2조 신설)
- 다.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관한 조항(안 10조의 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강환천)

- 「지방재정법」 (2018. 3. 27.)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(2020. 3. 3.)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‘예산편성’ 에서 ‘전체 예산 과정’ (시의회 의결사항은 제외)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